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83
----------	------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의자 : 지상욱 · 김도읍 · 김성찬
이종배 · 정태옥 · 이명수
안상수 · 홍문종 · 김선동
이양수 · 김한표 · 박찬우
배덕광 · 김태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대부업자 등이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 전가를 목적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9항,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52조제2항제16호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 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

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6.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 심인 등) ① ~ ⑧ (생 략) <u><신 설></u> ⑨ · ⑩ (생 략)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 심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 음) <u>⑨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 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 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u> <u>⑩ · 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u>
<u><신 설></u>	<u>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 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 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 공·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 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 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0조(별 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5. (생 략)	제50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p><u><신 설></u></p> <p>6. ~ 8. (생 략) ③ · ④ (생 략)</p> <p>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5. (생 략)</p> <p><u><신 설></u></p>	<p><u>5의2.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 한 자</u></p> <p>6.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2조(과태료)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 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② -----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u>16.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u></p>
---	---

<p>③ ~ ⑤ (생략)</p>	<p><u>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u>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